

제 4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8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의 목적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수급자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이용계약자

이용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체결이 가능하다.

3. 계약서류

계약당사자는 이용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

- 1) 장기요양 인정서 1부
-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 3) 수급자 및 보호자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1부,
급여제공계약서 부분 확인서 1부,
수급자(보호자) 설명자료 확인서 1부 등
- 4) 급여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4. 계약기간

기관은 수급자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 1)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수급자의 인정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 2) 계약기간 중 급성기 입원, 개인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 시에도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은 유효하다.
- 3) 계약기간의 종료 시 또는 후에는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제9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등급별 재가급여 월 이용한도액) 방문요양,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급여비용세부고시의 연도별 수가표에 따른다.

[부록]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수가

2. 본인부담금(수급자별 자격기준과 월 이용금액에 대한 %를 적용함)

구 분		금액(원)	내 역
월 이용한도	공단부담금	85%	서비스 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 급여를 제외한 100% 중 85% 보험공단이 지급
	본인부담금	15%	보험공단이 85%, 개인 부담금 15%
		6% , 9%	의료급여수급자, 감경대상자
		0%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3. 그 밖의 비용부담액

- 1)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금액을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2) 그 밖의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구분	내 용
신원인수인의 권리	<p>* 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 체결 및 급여제공범위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 2)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장기요양 급여납부확인서를 요구할 권리 3) 장기요양 급여제공계획을 변경할 권리 4) 급여제공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합당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권리 5) 기관과의 계약해지 요건에 부합하는 계약해지와 관련한 권리
신원인수인의 의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월 이용료를 성실히 납부할 의무 2) 수급자의 건강상태, 생활환경 변화, 신상변화 등을 기관에 제공할 의무 3) 수급자 외 가족이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을 의무 4) 급여제공직원의 부정을 담합하지 않으며 부정시, 즉시 기관에 알릴의무
계약의 해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수급자가 장기요양 보험 등급외자로 변경된 경우 2) ‘갑’(또는 ‘병’)이 종사자에게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시, 서비스 이용제한 또는 해지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3회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고의로 미납하거나 회피한 경우 5) 이용 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따르지 않고 수급자(보호자)의 부당한 요구로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가 월5회이상 무단으로 급여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p>7) 계약의 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이용 기관에 종결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할 수 있다.</p> <p>8) 이용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보호자) 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가 있는 경우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p>
--	--

제10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료 및 납부방법

구분	내 용
이용료	이용료란 본 기관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 본인부담금을 말하며, 비용산정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발생분으로 한다.
납부방법	<p>납부방법은 본 기관이 정하는 계좌에 다음달 10일까지 전월의 이용료를 납부(입금) 하여야 한다.(10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p> <p>* 방문요양 : 계좌번호 농협은행 351-1036-8905-73 햇살노인복지센터</p> <p>* 방문목욕 : 계좌번호 농협은행 351-1293-1941-33 햇살노인복지센터</p>

2.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비용변경 유형	변경방법 및 절차
연도별 수가 변경	수가변경 안내문 안내 -> 서비스제공 -> 본인부담금 청구
재계약 및 갱신계약, 등급변경	재계약 -> 위험도평가 및 욕구사정 -> 급여계획 -> 급여계획통보 -> 서비스제공 -> 본인부담금 청구
장기적 서비스내용 증감 (단발성 변경 및 단순일자, 시간변경은 제외)	수급자(보호자) 상담 -> 위험도평가 및 욕구사정 -> 급여계획 -> 급여계획서 통보 -> 서비스제공 -> 본인부담금 청구
급여제공내용변경 (공휴일, 연속급여 등)	공휴일이나 연속급여 요청시 -> 유선상담등으로 변경가능 -> 서비스제공 (급여제공기록지나 월일정표, 급여변경계획/확인서 등에 그 사유를 기록) -> 본인부담금 청구

제11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의 내용

1)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분	서비스내용
방문 요양 서비스	<p>가.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 청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배설도움, 화장실 이용하기등</p> <p>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 외출동행 (장보기, 산책, 물품구매, 병원이용등) 수급자의 방안 청소 및 환경관리, 수급자의 빨래, 식사준비, 설거지등</p> <p>라. 정서지원서비스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p> <p>마. 인지활동 지원 : 회상훈련, 기억력향상활동, 잔존기능유지 향상을 위한 사회활동훈련</p> <p>바. 지역자원 연계 서비스 및 응급지원 서비스</p>
<p>◆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생활서비스지원은 수급자 본인과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 가족에 관련된 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2)방문목욕 : 2인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급여를 제공한다.

방문 목욕 서비스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정돈 등
-----------------	--

2.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1) 비용의 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 2)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10일까지 입금한다.
- 3) 이용자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센터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제12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등)

1.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등

구 분	내 용
요양보호사의 배상책임	1) 기관은 직원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요양보호사 전문인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며, 배상관련 사항은 해당 보험사회사의 약관에 따른다. 2) 가족 또는 친족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배상 책임 보험 가입을 제외한다. 3) 수급자 또는 수급자 가족은 기관에 배상책임에 관한 손해배상(배상책임보험청구)을 청구할 수 있다. 4)기관은 수급자 또는 수급자 가족의 손해배상 청구가 있을 시에는 가입한 보험사에 즉시 처리를 요청한다.
요양보호사의 면책범위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 또는 사망 하였을 때 3) 수급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상해 또는 사망 하였을 때 4) 특이질환을 가진 수급자의 경우, 갑작스런 발작증세로 입원이나 사망시에는 정확한 규명을 내려 피해원인을 밝힐 때 까지는 요양보호사와 기관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5)기타 이외의 사고발생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법규를 참고하여 자문을 구하고 처리한다. 6) 서비스제공시간 이외의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센터는 책임을지지 아니한다.

제13조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본 기관의 경우 별도의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고, 아래의 절차에 따른다.

구 분	내 용
개정방법 및 절차	1) 노인복지법, 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 및 규칙 등에 의하여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은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재직직원의 의견을 물어 이에 과반수 이상 동의시 개정 할 수 있다. 다만, 연도별 신설 및 변경되는 장기요양급여 내용의 세부기준 고시, 근로기준법 등은 별도의 절차 없이 직원회의나 교육등으로 공유하고 수급자 및 보호자 안내 사항으로 같음하여 운영규정에 적용하여 시행한다. (운영규정의 문제점 파악 → 기관 실무자 회의진행 → 수급자 및 직원의 의견수렴 → 운영규정 개정)

[부록]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수가

방문요양/방문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6. 1월 기준)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2026년 1.1~ 적용)

구 분 (시간별)	'25년수가 금액(원)	'26년수가 금액(원)	구 분 (시간별)	'25년수가 금액(원)	'26년수가 금액(원)
30분 이상	16,940	17,450	150분 이상	49,160	50,640
60분 이상	24,580	25,320	180분 이상	55,350	57,020
90분 이상	33,120	34,120	210분 이상	61,670	63,530
120분 이상	42,160	43,430	240분 이상	68,030	70,080

○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2026년 1.1~ 적용)

분 류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88,99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80,23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50,100

*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2026년 1.1~ 적용)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6년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하위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감경 60% 감경 40%